

『구미시공동구설치및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국무조정실의 지하공간에 대한 특별점검 시, 지자체 조례정비 지시와 구미시시설관리공단의 설치에 따른 공동구의 위·수탁관리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·개선하여, 도시 내 지하공동구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 하고자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공동구관리협회의 구성. 점검주기 등을 조례에 반영코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공동구에 수용시설(제4조) 중 “체신용 케이블”을 “통신용 케이블”로 변경
- 공동구관리협회의 구성·운영(제9조)
 - 시장은 공동구의 안전관리 및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미시공동구관리협회(이하 “협회”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한다.
 - . 공동구 유지관련기관의 공무원(수탁기관 소속 임·직원 포함)
 - . 관할소방서 소속 공무원
 - . 공동구 유지관리 기관의 소속 임·직원
 - . 공동구의 구조안전 또는 방재업무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.
- 공동구의 관리위탁(제10조)
 - 시장은 공동구 유지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139조4항에 의하여 전기, 토목, 기계 분야의 전문기술인력이 확보된 전문관리업체 또는 구미시시설관리공단에 공동구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.

○ 점검(제11조)

- 관리자는 공동구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시점검,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기록관리 및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4. 참고사항

-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4조, 동법시행령 제39조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의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개정조례로서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위임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
- 구미시시설관리공단의 설치에 따른 공동구의 위·수탁관리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·개선하는 것으로서
-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구내의 수용시설, 공동구관리협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, 공동구의 관리위탁 및 안전점검 등으로서, 13조 부칙2조로 구성되어 있음.
- 지하공동구는 전력.통신케이블 및 상수도관을 수용하는 중요한 산업기반 시설로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지원 시스템이 필요함.
- 조례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